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대표자 성명		
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		
(전화번호:)			

「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 및 「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현황 2.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3.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규정 4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